



선 람	기관의 장

제1774호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공 고

○ 공 고 제 7 6 4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사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7 6 9 호	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제 7 7 6 호	서창동 3-268호선 보행로 설치공사 수용재결 신청서 공 시송달 공고	도 로 과	4
○ 공 고 제 7 7 6 호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 성 가 족 과	7
○ 공 고 제 7 7 8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총 무 과	22
○ 공 고 제 7 8 0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28

고 시

○ 고 시 제 4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30
---------------	-----------------	-----------	----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7. ~ 2023. 4. 24.(17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강*진	인천84바**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	인천84바**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길*희	인천81바**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은	인천84바**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기	인천86바**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주*용	인천84바**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홍*국	인천82바**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4. 7.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69호

서창동 3-268호선 보행로 설치공사 수용재결 신청서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2-65호(2022. 7. 14.)로 실시계획 인가된 서창동 3-268호선 보행로설치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송달)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4. 7.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서창동 3-268호선 보행로 설치공사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20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4. 7. ~ 2023. 4. 24.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2713)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수용재결신청사업 열람공고대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		영업권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서창동 소로 3-268호선 보행로설치공사	7	117.95	39,238,830					39,238,8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13,이상엽

사업시행자 조서(토 지)

[별지 제1목록]서창동 소로3-268호선 보행로 설치공사(23수용0028)

Page 1 / 2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부	실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15-6	임	임	5㎡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81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19-4	전	전	54㎡ x2/21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동 ***호		
5	"	419-5	"	"	21㎡ x2/21	"	"		
6	"	419-6	"	"	10㎡ x2/21	"	"		
						소계(3)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20-3	임	임	13㎡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72 **동 ***호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부	실제					
2	"	420-4	"	"	15㎡	"	"		
3	"	420-5	"	"	4㎡	"	"		
						소계(3)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19-4	전	전	54㎡ x18/21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5	"	419-5	"	"	21㎡ x18/21	"	"		
6	"	419-6	"	"	10㎡ x18/21	"	"		
						소계(3)건			
							- 이하여백 -		
	토 지 합 계	7필지			117.952	4인		1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76호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7.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와 보호·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조항 신설
-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조항 신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전화 453-5993, FAX 453-58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와 보호·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기반 마련

☐ 주요내용

- 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조항 신설 : (안 제4조)
-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조항 신설 : (안 제5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를 “이란 학교”로,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을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동구(이하 “구””를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교육장(이하“교육장””을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남동구 구민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노력한다.

제5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학생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8조에 따른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협의체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를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능은「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를 “기능은「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3. 남동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제10조(종전의 제7조) 전단 중 “다른위촉”을 “위촉”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 제2항 본문 중 “년”을 “연”으로, “임시회는”을 “임시회의는”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 중 “대하여「인천광역시 남동구 포상 조례」”를 “대하여「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1.-----이란 학교 ----- ----- -----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4.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명예훼손·모욕-----

-----.

2.----- 남동구(이하 “구”-----

-----.

3.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 교
육장(이하 “교육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

<신 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
 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
 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

다.

② 남동구 구민은 누구든지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노력
 한다.

제5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6항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8조에 따른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3. 인천남동경찰서 경찰 공무원

4. ~ 8. (생략)

③ (생략)

④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생략)

② -----
--- 심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남동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

-----.

제10조(위원의 임기) -----

----- 위촉 -----
----- 한다. -----

-----.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0조·제11조 (생략)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에 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연 -----
----- 임시회의는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제14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5조(포상) -----

-----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
-----.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의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78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0.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 및 기타 맞춤법 사항 변경
(안 제12조제2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5조제2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 재직 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84,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 및 기타 맞춤법 사항 변경
(안 제12조제2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5조제2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제2호)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을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
제15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생략)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4. (생략) ④ ~ ⑥ (생략)	제15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③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20일 3.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8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자 주소지 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4. 10.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3. 4. 10. ~ 2023. 4. 24.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0-0199694	미추홀도서관 자판기(3대)	박*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 (구월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 청문일시 : 2023. 5. 4.(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유통식품팀 ☎032-453-2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4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7.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26번길 40-6 (만수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2 (간석동)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4-26, 854-27, 854-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26번길 40-6 (만수동)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4.0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226번길 40-6 기초구간에위치하여 40-6을건물번호로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2 (간석동)	2023.04.07.	건축물대장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26 (간석동)	2023.04.07.	건축물대장 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28 (간석동)	2023.04.07.	건축물대장 말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0 (간석동)	2023.04.07.	건축물대장 말소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0-1 (간석동)	2023.04.07.	건축물대장 말소	